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원조사의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채용되는 직원에 대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민간인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등 6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 ·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 | |
|---|--|

별표 3의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규임용	·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채용신체검사서 1통 · 신원조사 회보서 1부 ·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부	편제 사유가 적힌 것 제1국민역 및 실역 미필 보충역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
---	------	---	--

		• 등기사항증명서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시사실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 것으로서 시장·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 처장이 발행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 우만 해당
--	--	---	---

별지 제12호서식의 참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고
1. 병적증명서는 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 보충역만 제출한다. 2. 신원조사 회보서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회보서”를 “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4의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규채용	인사기록카드	1통	대통령이 임용하는 경우에는 2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발급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 발급 ·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급 ·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채용신체검사서	1통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통	
		신원조사 회보서	1통	

	신원진술서	3통	· 대통령이 임용하는 경우에는 4통 ·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1통	별지 제34호서식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서	1통	별지 제35호서식 (대학교원만 제출함)
	호봉확정표	1통	별지 제15호서식
	대학교원 연구실적 심사 보고서	1통	별지 제36호서식 (대학교원만 제출함)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 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이 발급하는 신원조사 <u>회보서</u>	4. ----- <u>회보서</u> (「 <u>보안업무규정</u> 」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u>해당한다</u>)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신원진술서”를 “신원진술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원조사”를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비서류) ① 신규 임용되는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사본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구비서류) ① -----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민간인 <u>신원진술서</u> 4통	7. ---- <u>신원진술서</u>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 및 직원을 신규 임용 및 채용할 때에는 국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직원에 대해서는 국장이 각각 임용 및 채용 전에 <u>신원조사</u> 를 하여야 한다.	③ ----- ----- ----- ----- ----- <u>신원조사</u>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 ·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 | |
|---|--|

별표 3의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규임용	·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채용신체검사서 1통 · 신원조사 회보서 1부 ·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부	편제 사유가 적힌 것 제1국민역 및 실역 미필 보충역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
---	------	---	--

		• 등기사항증명서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시사실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 것으로서 시장·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 처장이 발행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만 해당
--	--	---	---

별지 제12호서식의 별첨서류란 제9호 중 “회보서”를 “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 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신원진술서”를 “신원진술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용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 원주”(請願主)라 한다]가 영 제4 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 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 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그 해당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승인신청서 등) ①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민간인 <u>신원진술서</u> 1부	3. ---- <u>신원진술서(「보안업무 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 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 다)</u>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33조”를 “제36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 등) ① (생 략)	제6조(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항운영자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보호구역등에 출입허가를 하려면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조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 ----- ----- ----- 제36조----- -----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